

소 장

원 고 별지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주 영, 강 용 석, 이 상 훈

피 고 현대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병 포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 및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 부터 완세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법무법인 한 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Ⅲ 315호)  
TEL. (02)537-9500(대표) FAX. (02)564-9889

## 1.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 현대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하겠습니다)는 증권투자신탁운용업무와 수익증권저축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현대증권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만 하겠습니다)와 현대투신증권주식회사(이하 현대투신이라고만 하겠습니다)가 판매한 수익증권의 운용을 맡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변지 2기재와 같이 현대증권과 현대투신이 판매한 수익증권인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1호"펀드와 "바이코리아 나폴레옹 1-1호"펀드의 수익증권을 각 매입한 사람들입니다. (갑제1호증의 1내지 18 각 수익증권 통장 각 참조)

## 2. 이 사건 펀드의 성격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펀드와 나폴레옹펀드의 약관(갑제2호증의 1,2)에 의하면, 주식(장외주식음 포함)에의 투자를 투자신탁재산의 20%이상 90%이하로 하고(다만 장외주식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30%이하로 함), 채권 및 수익증권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이상 80%이하로 투자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각 약관 제20조)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을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하고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며(각 약관 제24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각 약관 제11조), 수익증권의 환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소유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일정비율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며, 환매대금은 환매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각 약관 제16조)

따라서 이 사건 수익증권은 증권시장의 증권가격 변동에 따라 그 손익이 영향을 받게 되는 이른바 주식형 수익증권이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Ⅲ 315호)  
TEL. (02)537-9500(대표) FAX. (02)564-9889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원본의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신탁재산과 투신사자체의 고유재산간의 이른바 "방화벽 (Firewall)"은 배당액확정을 위한 기본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3. 피고의 불법행위책임발생

#### (1) 신탁운용회사의 고객에 대한 법률상 의무

투자신탁이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특정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피고와 같은 운용회사는 고객의 신탁재산과 투신사의 고유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운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그렇기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투자신탁운용회사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것이니, 투자신탁회사 또한 그러한 의무를 다한다는 가정하에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에 연 1,000분의 29.5를 곱한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각 약관 제22조).

#### (2) 피고의 펀드간 불법채권매매 및 상각행위

피고회사는 투신운용사로서 위와 같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펀드자산의 5%까지 타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점(각 약관 제20조 제2호 참조)을 이용하여 계열사인 위 현대투신과 공모하여 현대투신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상각 전용펀드(이른바 베드펀드)를 조성한 후 불량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피고는 주가가 급등하는 날을 골라 원고들이 가입한 펀드에 이를 편입시켜 다음날 상각하는 수

## 법무법인 한 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15호)  
TEL. (02)537-9500(대표) FAX. (02)564-9889

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선의의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자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며 아울러 고재의 이익을 보호할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 4. 피고의 불법상각내역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피고는 1999. 6.에서 같은 해 7월사이에 주가가 급등했던 날을 골라 위 르네상스 펀드에 36,845,980,887원어치, 나폴레옹 펀드에 12,316,122,345원어치의 불량수익증권을 편입하고, 이에 대하여 편입한 다음날 채권매매손실금액으로 처리하여 상각시키는 방식으로 르네상스펀드의 가입고객에게 18,049,047,135원(손실을 48.99%), 나폴레옹펀드의 가입고객에게 6,035,965,104원(손실을 49.01%)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는 위 기간동안 르네상스펀드의 평균금액이 약 6500억원, 나폴레옹펀드의 평균금액이 약 1천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각 신탁자산의 2.7%, 6%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로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가정할 때 위 "르네상스 1호"에 투자한 고객은 27만원, "나폴레옹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0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손해액은 변론의 진행과정에서 특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법무법인 한 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Ⅲ 315호)  
TEL. (02)537-9500(대표) FAX. (02)564-9889

**입 증 방 법**

- 1. 갑제 1호증의 1 내지 18 각 수익증권 통장
-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약관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소장부본 1통
- 1. 각 갑호증 1통
- 1. 위임장 1봉
- 1. 납부서 1통

2000. 8.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김 주 영  
 변 호 사 강 용 석  
 변 호 사 이 상 훈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법무법인 한 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Ⅲ 315호)  
 TEL. (02)537-9500(대표) FAX. (02)564-9889